

철회·폐업 신고서

접수번호	접수일	처리일	처리기간	즉시
신고인	성명(대표자)		생년월일	
	주소			
사업장	명칭		소재지	
	철회(폐업)일		철회(폐업)사유	
	신고확인증 분실사유(신고확인증을 분실한 경우에만 해당합니다)			

「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」 제3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제1항에 따라 신고(사업)를 철회(폐업)하고자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.

년 월 일

신고인

(서명 또는 인)

시장·군수·구청장 귀하

신고인 (대표자) 제출서류	1. 신고확인증 2. 기부식품등의 사용 또는 처분 계획서 ※ 신고확인증을 분실한 경우에는 분실사유를 작성하여야 합니다.	수수료 없 음
----------------------	--	------------

처리절차

